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사업등록증의 전자 등록 계획 차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9일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05/2013/ND-CP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사업등록증(한국의 법인등기에 해당함)의 신규발급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내용을 상업등기소(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Decree 05는 2013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자등록을 게시할 상업등기소의 웹사이트가 준비되지 않아, 전자 등록 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Decree 05의 하위규정으로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가 제정한 Circular 01이 2013년 4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1) 관할 성(Province) 정부 등기 부서에 신청
- (2) 상업등기소 산하 등기지원센터에 신청
- (3) 직접 상업등기소 웹사이트(www.dangkykinhdoanh.gov.vn)에 등록

다만 당초 상업등기소 웹사이트가 2013년 4월 15일부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가 직접 전자 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상업등기소 웹사이트가 운영을 개시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의 발급/변경 후 30일 내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